

## 속초시 근로자 소형건설기계(지게차) 교육 지원사업

「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3톤 미만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,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. 이에 속초시와 속초상공회의소는 「속초시 근로자 소형건설기계(지게차) 교육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1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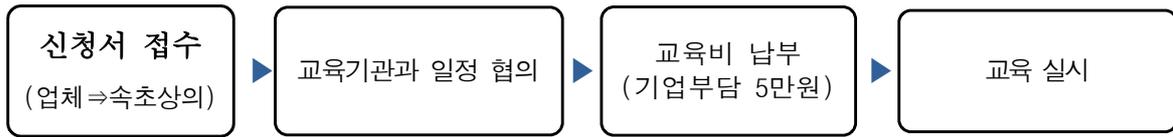
속초상공회의소 회장

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속초시 근로자 소형건설기계(지게차) 교육 지원사업
- 지원기간 : 2026년 3월 ~ 12월
- 지원대상 : 속초시 소재 제조·유통업·도매업 등 지게차를 사용하는 업체의 재직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 (비자 확인)
- 보조기관 : 속초시
- 수행기관 : 속초상공회의소
- 교육기관 : 설악산중장비학원  
(☎033-632-5000 / 고성군 토성면 풍곡길 63)
- 지원내용
  - 총 12시간 교육 (이론 6시간, 실습 6시간)
  - 교육비 30만원 (속초시 20만원, 속초상공회의소 5만원, 기업부담 5만원)
  - 업체당 1명 지원 (총 20개 업체 / 선착순 20명)
  - 취득자격 -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,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
- 기업부담금 입금계좌
  - 우리은행 1006-601-237404 예금주 속초상공회의소 / 금 5만원

## □ 신청안내

- ① 신청일자 : 2026년 3월 1일 ~ 접수 인원 마감 시 종료
- ② 신청인원 : 업체당 1명 (총 20명 / 선착순 마감)
- ③ 신청절차



- ③ 기타사항 :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 발급 시 자동차 1종 면허 필수이며, 전동 지게차의 경우 교육 이수증으로 사내 운전 가능

| 구분      |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  | 1종 운전면허 미소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조종 가능범위 | 3톤미만 지게차       |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솔리드타이어 형식의 전동지게차 및 입식지게차 |
|         | 전동지게차 및 입식지게차  |  |
| 발급형태    |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| 교육 수료증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서류 제출 및 문의전화

### ○ 제출서류

- ① 신청서 1부
- ② 사업자등록증 1부
- ③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부 (재직확인 관련서류 1부)
- ④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1부 (면허 있을경우 필히 첨부)
- ⑤ 외국인 근로자 신청 시 (외국인등록증 사본, 여권 사본)

○ 제출방법 : 이메일([sokcho@korcham.net](mailto:sokcho@korcham.net)) 또는 팩스(033-631-6977)

○ 제출처 : 속초상공회의소 총무회원과

○ 문의전화 : TEL 033-636-2564

### #붙임

- 1) 신청서 1부
- 2) 외국인 근로자 지게차 면허 취득 조건 안내문 1부.

[#붙임1]

**속초상공회의소**  
**속초시 근로자 소형건설기계(지게차) 교육 지원사업 신청서**

○ 기업 정보

|         |      |        |  |
|---------|------|--------|--|
| 회 사 명   |      | 사업자번호  |  |
| 담당자(직위) |      | E-mail |  |
| 직통전화    | 033) | 팩 스    |  |
| 휴 대 폰   | 010) |        |  |

○ 참가자 인적 사항

|         |  |          |   |
|---------|--|----------|---|
| 성 명     |  | 소 속/직 위  |   |
| 전 화     |  | 휴 대 폰    |   |
| 주민 번호   |  | E-mail   |   |
| 교육 희망 월 |  | 교육 희망 요일 | 평일 <input type="checkbox"/> 주말 <input type="checkbox"/> |

○ 개인정보 동의(필수)

참석자 본인은 속초상공회의소 『속초시 근로자 소형건설기계 교육 지원사업』에 필요한 성명, 휴대폰 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교육이 종료될 때까지 수집하고 이용함에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 합니다. 【 동의함】

● 참가자 서명 : (서명)

○ 안내 사항

교육 일정은 신청서 접수 후 교육기관에서 순차적으로 담당자님께 연락드릴 예정입니다.

대표자 : (인/서명)

속초상공회의소 귀중

## [#붙임2]

외국인 근로자 지게차(3톤 미만) 면허 취득 조건 안내

### ❖ 허용되는 체류자격(비자) 여부

✓ 취득 가능한 비자

E-9(비전문취업) —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

E-7(특정활동), H-2(방문취업)

F 계열 비자 (거주 및 가족과 관련된 장기 체류자격 F-2, F-4, F-5 등)

즉, 합법체류 + 신분증(외국인등록증)이 있으면 모두 가능

### ❖ 기본 제출서류

외국인등록증 사본 / 여권 사본 / 1종 보통 운전면허증

### ❖ 교육이수증만으로 운전 가능한 경우

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 지게차는 별도의 면허증 없이 '교육이수증'만으로 사업장 내 운전이 가능합니다.

전동식(전기)일 것: 배터리로 구동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.

솔리드 타이어 부착: 공기 주입식이 아닌 통고무(우레탄 포함)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.

사업장 내부에서만 운행: 도로로 나가지 않고 공장이나 창고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.

### ❖ 반드시 '면허증'이 필요한 경우

만약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, 반드시 교육이수증을 가지고 시청에 가서 '\*\*'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\*\*'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
디젤(경유) 지게차를 운전할 때

전지지게차라도 공기주입식 타이어를 사용하거나, '\*\*도로(공장 밖)\*\*'를 주행해야 할 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
### ❖ 기타 주의사항

안전검사 및 보험: 교육이수증만으로 운전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적법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.

단속 대비 : 현장 점검 시 본인이 이수한 교육이수증 원본 또는 복사본을 항상 사업장에 비치하거나 휴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